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·단시간 작업 등에 대해 유해인자의 노출수준,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17. ~ 2023. 12. 27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1조(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)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”는 별표 22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출수준, 노출기간,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

1.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(금지대상물질, 허가대상물질, 특별관리물질은 적용되지 않는다)
2.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(분진에 관한 건강진단만 해당한다)
3. 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작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관한 적용례) 제201조의 단서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01조(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)</u> <u>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“고</u> <u>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</u> <u>자”는 별표 22와 같다.</u>	<u>제201조(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)</u> <u>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“고</u> <u>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</u> <u>자”는 별표 22와 같다. 다만, 다</u>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 <u>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</u> <u>진단을 실시할 의사로부터 고용</u> <u>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</u> <u>노출수준, 노출기간, 유해성 등</u> <u>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실시가</u> <u>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</u> <u>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</u> 1. <u>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</u> <u>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</u> <u>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(금</u> <u>지대상물질, 허가대상물질, 특</u> <u>별관리물질은 적용되지 않는</u> <u>다)</u> 2. <u>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</u> <u>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</u> <u>외 작업(분진에 관한 건강진</u> <u>단만 해당한다)</u> 3. <u>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</u> <u>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낮</u> <u>다고 인정되는 작업</u>